

瑞山市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6. 15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6. 16

라. 上程日字 : 1999. 6. 25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方景泰)

가. 提案理由

- 시장의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·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의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
-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업무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시장의 소관사무중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업무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,
 -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규정 마련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.
-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여부를 명확히 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.
- 민간위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4항).
- 민간위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량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정부담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구체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함(안 제5조).
- 투명성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한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규정마련(안 제6조).
- 서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(안 제7조).
-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기관을 정함(안 제9조).
-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의무화 규정마련(안 제10조제1항).

-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마련(안 제12조).
-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·감찰 규정 마련(안 제13조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○ 동 조례안은

-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
 -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정하였고
 - 표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“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”는 조항을
- ⇒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안 발생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
- ⇒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등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 조치하였고
- 또한 표준안에서는 한시적기구인 “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”만 두도록 하였으나
- ⇒ 동 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이 년차별로 추진된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“민간위탁심의위원회” 설치 규정을 두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○ 질의 :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경쟁 입찰과 단서조문의 수의계약 방식의 절충형을 채택한 사유는?

답변 :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종말처리장등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 계약을 하므로써 보다 전문성이 있고 우량한 업체에 위탁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충형을 채택하였음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1호
의결 년월일	1999. 6. (제 회)

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9. 6. 15.

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6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15.

제출자 : 서산시장

제정이유

- 시장의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시장·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의 행정조직 혁신을 이루고자
-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이 조례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.
- 시장의 소관사무중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, 위탁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대상사무를 선정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.
-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위임기관으로 부터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여부를

명확히 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.

- 민간위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4항).
- 민간위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량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정부담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구체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함(안 제5조).
- 투명성 있는 수탁기탁의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후 입찰에 응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 추진시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의 구성, 위원정수 및 위촉 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수탁 대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따라 서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의 구성, 위원정수 및 위촉 등과 수탁 대상기관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).
- “수탁기관은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”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이행에 관한 성실의무사항을 명시함(안 제8조).
-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,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고, 수탁기관

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
-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의무화하고, 쌍방간 협약체결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여 차후 협약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함(안 제10조제1항).
- 협약서의 내용에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의 의무이행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협약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.
-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사무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위법·부당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(안 제11조).
-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와 서식·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처리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함(안 제12조).
-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예방·감찰 하기 위하여 사무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,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).
-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.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지방재정법 제109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

○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비교

구분	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제7조)	적격자 심사위원회(제7조의2)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소속 공무원(시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)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▶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▶ 기타 민간인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소속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▶ 당해 전문가(위탁 사무와 관련한 민간인 전문가)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<p>⇒ 위탁하여야 할 사무에 따라 건건 별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</p>
위원정수	▶ 7 ~ 9인	▶ 6 ~ 9인
주요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▶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	▶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(적격자) 심사
존속기간	▶ 민간위탁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계속 존속	▶ 적격자 심사 후 자동해산
구성 및 운영 주체	▶ 자치행정과 인사분야	▶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

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심의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민간위탁 심의위원회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및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

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서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및 기타 민간인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④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“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의2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“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